

입법예고

농 산 물 의 생 산 자 를 위 한
직 접 지 불 제 도 시 행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2023. 11.

농 립 축 산 식 품 부

(공익직불정책과)

1. 개정 이유

중전의 경영이양직불사업을 개편한 신규 사업(농지이양은퇴직불)이 '2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라 개편(안)을 근거 법령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영이양직접직불사업의 명칭을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로 변경(안 제2조~제43조)

사업명칭이 “경영이양직접지불”에서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로 변경됨에 따라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명칭 변경에 따라 “경영이양”을 “농지이양”으로, “경영이양보조금”을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용어 변경

나. 농지이양 대상 개선(안 제2조제3호)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등을 위해 농지이양 받는 대상 우선순위를 “전업농업인” 중심에서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의에 “전업농업인등”을 “청년농업인등”으로 개선

다. 농지이양 방식 개선(안 제2조제5호)

과거 임대 이양 이후의 영농 복귀 문제 개선을 위해 농지이양 방식을 매도에 한정하되 임대인 경우 매도 조건부 임대 조건의 농지연금에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를 허용하는 것으로 “농지이양” 정의를 개선

라. 농지이양은퇴직불의 사업목적 등 개선(안 제3조, 제4조)

개편안에 따라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목적에 맞게 중전의 사업목적인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 및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고령농은퇴유도 및 소득안정, 청년농 중심 농지이양으로 세대전환 촉진”으로 개선

마. 부칙 경과규정 신설(안 제1조, 제2조)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종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이 끝나지 않은 임대 약정자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 농지 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 가능토록 하는 등의 경과 규정 신설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서 제43조까지 “경영이양직접지불”을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로 “경영이양”을 “농지이양”으로 “경영이양보조금”을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한다.

제2조3호 중 “전업농업인등”을 ““청년농업인등”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후계농업인, 동법 제2호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으로 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을 삭제한다.

제2조5호 중 “에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를 “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0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연금에 약정을 체결하여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나목의 “64세 이하의 전업농업인등”을 “청년농업인등”로 한다.

제3조제①항 중 “영농 규모화 촉진”을 “농지이양 촉진”으로 한다.

제4조제①항 중 “고령은퇴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고령농가의 은퇴 유도 및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농 중심으로 농지를 이양하여 세대전환을 촉진하기”으로 한다.

제7조제1호가목의 “면적 이하의 농지”를 “면적의 농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공사와 임대 또는 임대위탁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어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전 규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은 해지하고, 이 영에 따라 지급약정을 새롭게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약정을 새롭게 체결한 자(이하 “약정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액을 산출할 때 그 지급기간은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령별 지급기간에서 중전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기간을 월 단위로 산정하여 제외한 지급기간으로 한다.

③ 중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공사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약정자를 제외한 자에 대해서는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2. (생 략) 3. “ <u>전업농업인등</u>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 <u>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10조에 따른 <u>후계농업경영인</u> 및 「 <u>농지법</u> 」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 략) 5. “ <u>경영이양</u> ”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논·밭·과수원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64세 이하의 전업농업인등(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	제2조(정의) 1.·2. (현행과 같음) 3. “ <u>청년농업인등</u> ”이란 「 <u>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u>후계농업인</u> , 같은 법 제2호2호에 따른 <u>청년농업인</u>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 <u>농지법</u> 」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5. “ <u>농지이양</u> ”이란 ----- ----- ----- ----- ----- ----- ----- ----- 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0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연금에 약정을 체결하여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u>청년농업인등</u> ----- -----.

비속은 제외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소득안 정, 영농 규모화 촉진 및 관리를 위 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는 <u>경영 이양직접지불제도</u> 및 <u>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u> 로 구분한다.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 -, <u>농지이양 촉진</u> ----- ----- ----- ----- ② ----- ----- <u>농지 이양은퇴직접지불</u> ----- -----
제3조의2(직접지불제도 적용대상) ① (생 략) ② 직접지불제도(<u>경영이양직접지불 제도</u> 는 제외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초지는 「농어업경영체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 1항제1호에 따라 등록·변경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로 한다.	제3조의2(직접지불제도 적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u>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u> -----) ----- ----- ----- -----.
제2장 <u>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u>	제2장 <u>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u> ---
제4조(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고령은퇴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전업 농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u> 을 위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에 <u>경영 이양한 농업인에게 경영이양소득보 조금(이하 “<u>경영이양보조금</u>”이라 한다)을 지급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u>경영이양보조금</u> 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 다.	제4조(<u>농지이양은퇴</u> -----) ① ----- <u>고령농가 의 은퇴 유도 및 소득 안정을 도모 하고, 청년농 중심으로 농지를 이양 하여 세대전환을 촉진하기</u> ----- ----- <u>농지이양</u> ----- <u>농지이 양은퇴</u> -----(<u>농지이양은퇴</u> - -----) ----- ② ----- <u>농지이양은퇴</u> - ----- ---

제5조(<u>경영이양보조금</u>의 신청 대상자) ① <u>경영이양보조금</u>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제9조에 따른 <u>경영이양보조금</u>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하 “선정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농업인 2.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u>경영이양보조금</u>을 신청할 수 없다. 1.·2. (생략)	제5조(<u>농지이양은퇴</u>----- --) ① <u>농지이양은퇴</u>----- ----- ----- 1. ----- <u>농지이양은퇴</u>----- ----- ----- ----- ----- ----- 2. (현행과 같음) ② ----- ----- <u>농지이양은퇴</u>----- 1.·2. (현행과 같음)
제6조(<u>경영이양보조금</u>의 지급대상 농지) <u>경영이양보조금</u>의 지급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u>경영이양</u> 이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2. (생략)	제6조(<u>농지이양은퇴</u>----- --) <u>농지이양은퇴</u>----- -----. 1. ----- ----- <u>농지이양</u> ----- ----- ----- ----- 2. (현행과 같음)
제7조(<u>경영이양보조금</u>의 지급요건) <u>경영이양보조금</u>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u>경영이양보조금</u>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일까지 소유농지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을 이양할 것	제7조(<u>농지이양은퇴</u>----- --) <u>농지이양은퇴</u>----- ----- 1. ----- <u>농지이양은퇴</u>----- ----- ----- ----- -----

가.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u>면적 이하의 농지</u> 나. (생략) 2. 제12조에 따른 <u>경영이양보조금</u>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 중인 농지가 없을 것	가. ----- ----- -- <u>면적의 농지</u> 나. (현행과 같음) 2. ----- <u>농지이양은퇴</u>----- ----- ----- -----
제8조(<u>경영이양보조금의 산정기준</u>) ① <u>경영이양보조금의 경영이양</u> 면적당 지급 단가는 <u>경영이양</u>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과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u>경영이양보조금</u> 지급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 단가에 <u>경영이양</u> 면적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u>경영이양</u> 면적의 상한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u>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u> 선정 신청) 제4조에 따라 <u>경영이양보조금</u>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경영이양보조금</u>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공사에 하여야 한다. 제10조(<u>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u>의 조사) 공사는 제9조에 따른 신	제8조(<u>농지이양은퇴</u>----- ---) ① <u>농지이양은퇴</u>-----<u>농지</u> <u>이양</u>----- <u>농지이양</u> ----- ----- ----- ----- ----- ----- -----. ② <u>농지이양은퇴</u>----- ----- <u>농지이양</u>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u>농지이양</u> ----- ----- ----- 제9조(<u>농지이양은퇴</u>----- -----) ----- <u>농지이양은퇴</u>----- ----- ----- ----- <u>농지이양은퇴</u>----- ----- 제10조(<u>농지이양은퇴</u>----- -----) -----

청이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경영이양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논·밭·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거나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2.3. (생략)

4. 그 밖에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제11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조사 결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

① 공사는 제11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이양보조금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1. 경영이양한 논·밭·과수원의 표시

2.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액 및 지급기간

3. (생략)

4. 경영이양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

1. ----- 농지이양-----

2.3. (현행과 같음)

4. ----- 농지이양은퇴-----

제11조(농지이양은퇴-----
-----)
----- 농지이양은퇴-----

-- 농지이양은퇴-----
-----.

제12조(농지이양은퇴-----)

① ----- 농지이양은퇴-----
----- 농지이양은퇴-----

----- 농지이양은퇴-----
----- 농지이양은퇴-----

-----.

② (현행과 같음)

1. 농지이양-----

2. 농지이양은퇴-----

3. (현행과 같음)

4. 농지이양은퇴-----

5. 그 밖에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 ① (생략)

1.2. (생략)

3. 경영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임대 또는 임대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4.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경영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5. (생략)

6.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경영이양한 농지에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등의 영농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② (생략)

1.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밭·과수원을 매도에 의한 경영이양을 하기 위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 또는 임대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2.3. (생략)

제14조(경영이양보조금의 환수 등)

① 공사는 제13조에 따라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5. ----- 농지이양은퇴-----

제13조(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농지이양-----

4. ----- 농지이양-----

5. (현행과 같음)

6. ----- 농지이양-----

② (현행과 같음)

1. -----
----- 농지이양-----

2.3. (현행과 같음)

제14조(농지이양은퇴-----)

① -----

----- 농지이양은퇴-----
----- 농지이양은퇴-----
-----.

1. 약정을 해지한 경우: <u>경영이양</u>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지일까지 지급한 <u>경영이양</u>보조금을 환수 2. 약정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해제한 경우: <u>경영이양</u>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u>경영이양</u>보조금에 <u>경영이양</u>보조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환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 ② 제1항에 따른 <u>경영이양</u>보조금의 지급중단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u>경영이양</u>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① 공사는 제12조에 따라 <u>경영이양</u>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약정의 상대방이 약정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u>경영이양</u>보조금을 받은 자 및 <u>전업농업인</u>등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등 적정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1조(보고) ① (생 략) 1. <u>경영이양</u>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u>경영이양</u>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u>경영이양</u>보조금의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	1. ----- <u>농지이양은퇴</u>----- ----- <u>농지이양은퇴</u>----- 2. -----<u>농지이양은퇴</u>----- ----- <u>농지이양은퇴</u>----- <u>농지이양은퇴</u>----- ----- ② ----- <u>농지이양은퇴</u>----- ----- -----. 제15조(<u>농지이양은퇴</u>-----) ① ----- ----- <u>농지이양은퇴</u>----- ----- -----. ② ----- <u>농지이양은퇴</u>----- ----- <u>청년농업인</u>----- ----- -----. 제41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1. <u>농지이양은퇴</u>----- ----- 2. <u>농지이양은퇴</u>----- ----- 3. ----- <u>농지이양은퇴</u>----- -----
--	---

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생략)

② (생략)

제42조(소요경비의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제4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경영이양 보조금의 지급 및 조건불리지역의 선정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② (생략)

③ (생략)

1. 제10조에 따른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대상자 조사에 관한 사무
2. 제11조에 따른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약정 체결 및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
4. (생략)
5. 제14조에 따른 경영이양 보조금의 지급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무
6. 제15조에 따른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7. (생략)

④·⑤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소요경비의 지급) -----

----- 농지이양
은퇴-----

-----.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농지이양은퇴-----

2. ----- 농지이양은퇴-----

3. -----
농지이양은퇴-----
4. (현행과 같음)
5. ----- 농지이양은퇴-----

6. ----- 농지이양은퇴-----

7.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약정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공사와 임대 또는 임대위탁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어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은 해지하고, 이 영에 따라 지급약정을 새롭게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약정을 새롭게 체결한 자(이하 “약정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액을 산출할 때 그 지급기간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령별 지급기간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기간을 월단위로 산정하여 제외한 지급기간으로 한다.

③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공사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약정자를 제외한 자에 대해서는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